



제2882호 2023. 2. 3.(금)

www.jeonbuk.go.kr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207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전라북도 규칙 제3208호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9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7호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8호 2023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운행비 고시 1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9호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2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2호 오동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3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3호 오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3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4호 오동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5호 오동천 폐천부지 고시 37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38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6호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3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9호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9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9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42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5
- 정읍시 고시 제2023-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47
- 정읍시 공고 제2023-1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48
- 남원시 고시 제2023-1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 김제시 고시 제2023-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51
- 김제시 고시 제2023-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2
- 김제시 공고 제2023-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금산 소로3-10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55

기 타

-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57
-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3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61
-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4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65
-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5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69

발행 전라북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2월 3일

전라북도 규칙 제3207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라북도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제3조 관련)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근거
일자리민생경제과	소상공인희망센터 관리·운영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금융사회적경제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을기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청년정책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문화산업과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문학관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관광산업과	전북투어패스 운영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체육정책과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문화유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과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과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아동복지법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법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복지법
보건의료과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근거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운영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운영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과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운영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과	도립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호작업장 운영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건강증진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감염병관리과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환경정책과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산림녹지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산림보호법
교통정책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과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에너지수소산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지원시설 민간위탁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농업정책과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촌활력과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협력추진단	전라북도 서울·전주장학숙	전라북도 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통	기타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와 일회성사무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 도지사 결재를 받은 사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전라북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란 -----을 말한다.
- 2.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 가.
 - 나.
-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가. 시설 : 전라북도 ○○시 ○○구 ○○○로 △△-△△
 - 나. 부대시설 :
 - 다. 주요장비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의 운영관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운영 보조금을 1년차는 금-----원(원), 2년차는 금-----원(원), 3년차는 금-----원(원)으로 한다. 단, 명시된 보조금은 위탁관리에 대가가 아닌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이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물품 구입 등 민간위탁금 집행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본 위·수탁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을 요구 시 “위탁자”가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포함)를 “위탁자”에 제출하고, “위탁자”는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10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휘·감독·감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휘·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휘·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2월 3일

전라북도 규칙 제3208호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라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 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 2. 항공대원: 구조·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
- 3. 그 밖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제3조(항공대의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제4조(항공대의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구조구급과장

나. 항공대장

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을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방호예방과장, 구조구급과장, 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항공대장

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사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19항공대 업무분장(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무 분 장
운 항 실	<p>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비행평가·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 실	<p>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감항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부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정비·탑승업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정비기록관리 등 정비관련 문서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실	<p>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 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27호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라북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 정읍시장
- 2)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나.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 1) 명 칭 :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 2) 목 적 :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내 캠핑장, 사계절 정원 및 짚와이어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3)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산193번지 일원
- 4) 면 적 : 7,898㎡(캠핑장 3,500㎡, 사계절 정원 4,256㎡, 짚와이어 142㎡)
- 5)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2023. 12.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붙임1”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실음생략”

마.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소 계	400	795	958	2,153
국비	300	200	958	1,458
지방비	100	595		69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붙임2”

2.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산193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지역개발사업
 - 2) 명 칭 :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7,898㎡(캠핑장 3,500㎡, 사계절 정원 4,256㎡, 길와이어 142㎡)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 정읍시장
 - 2)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2) 준공예정일 : 2023. 12.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2”
3.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전라북도청 지역정책과(☎063-280-3616), 정읍시 도시과(☎539-58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 위치도



붙임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	성명	주소
합계					66,241	7,898		
1	산내	매죽	산188	임	5,206	1,504	진라북도	-
2	산내	매죽	산193	임	22,389	52	진라북도	-
3	산내	매죽	산190-3	임	7,495	1,848	연양김씨*****중중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4**
4	산내	매죽	산190-4	임	1,022	436	연양김씨*****중중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4**
5	산내	매죽	606	임	795	39	산림청	-
6	산내	매죽	605-8	잡	1,041	217	정읍시	-
7	산내	매죽	604-2	잡	1,510	864	정읍시	-
8	산내	매죽	603	잡	112	5	정읍시	-
9	산내	매죽	597	잡	1,051	68	정읍시	-
10	산내	매죽	617	대	3,293	23	정읍시	-
11	산내	매죽	산186	임	22,327	2,842	최*언 외 3명	정읍시 수성동 961 부영아파트 1**-9**

전라북도 고시 제2023-28호

2023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운행비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및 차량 운행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고시명 : 2023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운행비
2. 적용기간 : 고시일로부터 품질시험 수수료 변경 고시일까지
3. 시험종목 : 26개 종별 143종목

2023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운행비

[수수료]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일수	비고
성토용흙	합수비	KS F 2306	15,400	3	
	입도	KS F 2302	222,800	6	
	세립토비율(흙썰기)	KS F 2309	40,300	4	
	밀도	KS F 2308	62,800	3	
	액성한계	KS F 2303	66,100	3	
	소성한계	KS F 2303	42,800	3	
	지지력비(CBR)	KS F 2320	373,900	10	
	다짐	KS F 2312	209,600	5	
	토량환산계수(L)	시방서	2,243,900	현장여건에 따라	
	토량환산계수(L/C)	시방서	2,453,500	현장여건에 따라	
퇴매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다짐	KS F 2312	196,600	5	
	현장밀도	KS F 2311	95,300	현장여건에 따라	
	평판재하(성토체)	KS F 2310	203,500	현장여건에 따라	
	입도	KS F 2302	222,800	6	
	합수비	KS F 2306	15,400	3	
콘크리트용 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44,000	5	
	입도	KS F 2502	46,100	5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22,400	4	
	잔골재의 유기 불순물	KS F 2510	25,800	5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일수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42,100	5	
	안정성	KS F 2507	104,200	12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39,400	5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43,500	5	
	입도	KS F 2502	46,100	5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22,400	4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42,100	5	
	안정성	KS F 2507	97,900	1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43,500	5	
	입도	KS F 2502	45,300	5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22,400	4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42,100	5	
	굵은 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106,400	12	
균지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온도	시방서	17,000	5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KS F 2402	9,800	7	
	공기량	KS F 2409	21,800	7	
	용적	KS F 4009	19,000	7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20,500	7	
	압축강도(3개한조)	KS F 2405	13,800	실소요일	
	공시체제작	KS F 2403	51,500	7	
석재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51,000	5	
	압축강도	KS F 2519	29,800	5	
노체	다짐	KS F 2312	186,000	5	
	함수비	KS F 2306	15,200	3	
	현장밀도	KS F 2311	82,900	현장여건에 따라	
	평판재하	KS F 2310	203,500	현장여건에 따라	
노상	다짐	KS F 2312	185,300	5	
	함수비	KS F 2306	15,100	3	
	현장밀도	KS F 2311	82,300	현장여건에 따라	
	평판재하	KS F 2310	203,500	현장여건에 따라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23,100	4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41,300	5	
	마모	KS F 2508	44,700	5	
	노상토지저력비(CBR)	KS F 2320	339,200	10	
	다짐	KS F 2312	183,600	5	
	체가름	KS F 2502	199,000	5	
	함수비	KS F 2306	15,100	3	
현장밀도	KS F 2311	82,300	현장여건에 따라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일수	비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평판제하	KS F 2310	203,500	현장여건에 따라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80,400	5	
시멘트안정처리기층	체가름	KS F 2502	199,300	5	
	밀도 및 흡수율/굵은골재	KS F 2503	41,300	5	
	밀도 및 흡수율/잔골재	KS F 2504	42,900	5	
	안정성	KS F 2507	96,900	12	
	마모	KS F 2508	43,100	5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23,900	4	
	모래당량	KS F 2340	82,400	5	
	다짐	KS F 2312	183,600	5	
	압축강도	KS F 2328	19,400	7	
	함수비	KS F 2306	13,200	4	
	현장밀도	KS F 2311	82,100	현장여건에 따라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42,100	5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41,500	5	
안정성		KS F 2507	97,500	12	
마모		KS F 2508	42,700	5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339,200	10	
다짐		KS F 2312	183,600	5	
모래당량		KS F 2340	82,700	5	
체가름		KS F 2502	201,200	5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17,300	4	
함수비		KS F 2306	15,100	3	
현장밀도		KS F 2311	82,300	현장여건에 따라	
평판제하		KS F 2310	203,500	현장여건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부순굵은골재/입도	KS F 2502	40,300	5	
	부순굵은골재/절건밀도	KS F 2503	42,800	5	
	부순굵은골재/흡수율	KS F 2503	16,500	5	
	부순굵은골재/안정성	KS F 2507	95,500	12	
	부순굵은골재/편장석률	KS F 2575	28,700	5	
	부순굵은골재/마모율	KS F 2508	42,200	5	
	잔골재/입도	KS F 2502	45,700	5	
	잔골재/절건밀도	KS F 2504	41,800	5	
	잔골재/흡수율	KS F 2504	15,100	5	
	잔골재/안정성	KS F 2507	95,100	12	
	잔골재/모래당량	KS F 2340	82,100	5	
	잔골재/공극률	KS F 2384	28,900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중간층용/다짐횟수(회)	KS F 2337	42,500	7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일수	비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중간층용/안정도	KS F 2337	88,600	7	
	기층용·중간층용/흐름값	KS F 2337	88,600	7	
	기층용·중간층용/공극률	KS F 2364	96,400	7	
	기층용·중간층용/포화도	KS F 2349	95,600	7	
	기층용·중간층용/간극율	KS F 2349	95,600	7	
	표층용/다짐횟수	KS F 2337	43,100	7	
	표층용/안정도	KS F 2337	88,600	7	
	표층용/흐름값	KS F 2337	88,600	7	
	표층용/공극률	KS F 2364	96,400	7	
	표층용/포화도	KS F 2349	95,600	7	
	표층용/간극율	KS F 2349	95,600	7	
플랜트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63,000	5	
	골재의 온도	KS F 2356	48,100	5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54,300	5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	수분함량	KS F 3501	17,100	5	
	입도	KS F 3501	32,900	5	
플랜트혼합물	혼합물온도	시방서	48,200	5	
	역청함유량	KS F 2354	124,400	7	
	체가름	KS F 2502	134,500	7	
	마살안정도	KS F 2337	91,000	7	
	흐름값	KS F 2337	88,600	7	
혼합물의포설	밀도	KS F 2353	76,000	5	
	두께	KS F 2367	31,500	5	
	코어채취	KS F 2350	155,000	현장요청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통블록/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12,200	7	
	보통블록/휨강도	KS F 4419	35,000	7	
	보통블록/흡수율	KS F 4419	35,000	7	
	투수성블록/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12,200	7	
	투수성블록/휨강도	KS F 4419	35,000	7	
콘크리트 경계블록(보차도용)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4006	12,200	7	
	휨강도	KS F 4006	34,700	7	
	흡수율	KS F 4006	32,500	7	
흙댐,용수로,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비	KS F 2306	15,400	3	
	다짐	KS F 2312	209,800	5	
	현장밀도	KS F 2311	95,300	현장여건에 따라	
축제성토공	다짐	KS F 2312	185,600	5	
	현장밀도	KS F 2311	83,100	현장여건에 따라	
	함수비	KS F 2306	15,400	3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수료(원)	소요일수	비고
호안용블록(콘크리트 및 모르타)	압축강도	KS F 2405	28,400	7	
콘크리트벽돌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4	11,500	7	
	기건비중	KS F 4004	19,800	7	
	압축강도	KS F 4004	29,900	7	
	흡수율	KS F 4004	58,700	7	
속빈콘크리트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2	11,500	7	
	기건비중	KS F 4002	22,200	7	
	압축강도	KS F 4002	25,400	7	
	흡수율	KS F 4002	51,100	7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휘도)	지방서	245,200	현장여건에 따라	

○ 현장 조사 및 시험 시에는 아래 사항을 도 수입증지로 별도 징수

1. 현장 시험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여비 조례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3인 : 60,000원)

[차량 운행비]

[단위 : 원]

시 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운행비	50,300	76,700	67,100	46,900	38,700	64,900	59,600

시 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운행비	67,600	83,400	54,100	35,100	18,500	87,800	74,500

전라북도 고시 제2023-29호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2-107(2022.06.10.)호로 고시된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사업명 :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고창군 아산면, 고창읍 일원
3. 사업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혜면적 : 86.5ha
5. 사업개요
 - 가. 수원공 : 배수문 3개소
 - 나. 평야부 : 배수로 정비 5조 2,657m, 복토 9.70ha
6.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7. 총사업비 : 8,798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 : 063-560-1529)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매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아산면 봉덕리	378-8	378-13	답	430.0	25.0	국(건설부)					
2	아산면 봉덕리	378-7	378-11	답	1,722.0	76.0	국(건설부)					
3	아산면 봉덕리	378-10	378-14	답	301.0	8.0	전라북도					
4	아산면 봉덕리	1056	1056-1	답	1,749.5	708.0	양귀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264				
5	아산면 봉덕리	1057	1057-1	답	3,711.1	996.0	성백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4				
6	아산면 봉덕리	1058	1058-1	답	1,292.6	8.2	성백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4				
7	아산면 봉덕리	1066	1066-1	답	4,325.6	938.4	고창군					
8	아산면 봉덕리	1078	1078-1	답	1,718.1	707.8	고창군					
9	아산면 봉덕리	1079	1079-1	답	2,943.0	400.2	광산김씨대 양공파종중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329				
10	아산면 봉덕리	1095	1095-1	도	255.8	52.3	국(농림축산 식품부)					
11	아산면 봉덕리	1096	1096-1	구	224.4	38.3	국(농림축산 식품부)					
12	아산면 봉덕리	1097	1097-1	구	1,004.4	32.9	국(농림축산 식품부)					
13	아산면 봉덕리	1100	1100-1	도	1,342.1	59.8	국(농림축산 식품부)					
14	아산면 봉덕리	1101	1101-1	구	378.5	39.5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아산면 상갑리	258-16	258-16	답	84.0	84.0	국(건설부)					
16	아산면 상갑리	258-17	258-17	천	4.0	4.0	국(건설부)					
17	아산면 상갑리	258-20	258-22	답	41.0	14.0	국(건설부)					
18	아산면 상갑리	258-21	258-23	천	14.0	4.0	국(건설부)					
19	아산면 상갑리	278-10	278-18	답	207	9.0	국(건설부)					
20	아산면 상갑리	278-1	278-14	답	129.0	26.0	국(건설부)					
21	아산면 상갑리	278-5	278-16	답	346.0	62.0	국(건설부)					
22	아산면 상갑리	420-4	420-14	천	2,519.0	18.0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아산면 상갑리	420	420-11	천	8,838.0	91.8	국(건설부)					
24	아산면 상갑리	585-2	585-2	구	52.0	52.0	국(농수산부)					
25	아산면 상갑리	674	674-1	답	853.4	469.4	안도희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34				
26	아산면 상갑리	675	675-1	답	899.6	326.0	국(기획재정 부)					
27	아산면 상갑리	676	676-1	답	3,859.2	127.7	전동순	전라북도 익산시 영동동 252-53				
28	아산면 상갑리	687	687-1	답	3,396.2	696.6	문순옥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갑평1길 23				
29	아산면 상갑리	698	698-1	답	1,131.4	367.7	강형희 외 3명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서당촌길 23-7				
30	아산면 상갑리	706	706-1	답	2,048.1	966.6	강영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8-18-2층				
31	아산면 상갑리	716	716-1	답	3,449.7	951.8	신이호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당산길 60-22				
32	아산면 상갑리	727	727-1	답	3,524.7	951.3	이수현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갑평1길 36				
33	아산면 상갑리	737	737-1	답	4,723.4	929.9	전이환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265				
34	아산면 상갑리	747	747-1	답	5,557.3	89.7	한분희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26				
35	아산면 상갑리	780	780-1	도	1,258.6	42.2	국(농림축산 식품부)					
36	아산면 상갑리	783	783-1	구	1,043.8	26.6	국(농림축산 식품부)					
37	아산면 상갑리	785	785-1	구	881.2	26.7	국(농림축산 식품부)					
38	아산면 상갑리	788	788-1	구	676.6	26.5	국(농림축산 식품부)					
39	아산면 상갑리	789	789-1	구	321.5	7.2	국(농림축산 식품부)					
40	아산면 상갑리	792	792-1	도	600.5	40.1	국(농림축산 식품부)					
41	아산면 상갑리	793	793-1	구	920.2	32.9	국(농림축산 식품부)					
42	아산면 상갑리	797	797-1	구	648.7	22.4	국(농림축산 식품부)					
43	아산면 상갑리	799	799-1	도	1,848.7	40.4	국(농림축산 식품부)					
44	아산면 상갑리	800	800-1	구	906.8	36.1	국(농림축산 식품부)					
45	아산면 상갑리	803	803-1	구	159.1	26.1	국(농림축산 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6	아산면 상갑리	806	806-1	구	4,599.6	109.0	국(농림축산 식품부)					
47	고창읍 죽림리	767	767-1	답	1,990.0	476.0	국(기획재정 부)					
48	고창읍 죽림리	768	768-1	답	3,109.0	102.0	김옥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40				
49	고창읍 죽림리	798	798-1	답	3,830.0	641.0	이수옥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남구3길 26-3				
50	고창읍 죽림리	799	799-1	답	1,700.0	726.0	김만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875				
51	고창읍 죽림리	827	827-1	답	1,774.0	719.0	김종석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길 24-6				
52	고창읍 죽림리	828	828-1	답	1,656.0	499.0	김경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26-29 203호(잠실동)				
53	고창읍 죽림리	829	829-1	답	2,335.0	167.0	김규상 외 2명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392				
54	고창읍 죽림리	980	980-1	도	1,456.0	26.0	국(농림수산 부)					
55	고창읍 죽림리	982	982-1	도	1,494.0	46.0	국(농림수산 부)					
56	고창읍 죽림리	998	998-14	구	46,813.0	336.0	국(농림수산 부)					
57	고창읍 죽림리	998	998-15	구	46,813.0	150.0	국(농림수산 부)					
58	고창읍 죽림리	998	998-16	구	46,813.0	260.0	국(농림수산 부)					
59	아산면 하갑리	686	686-1	답	1,474.9	309.5	국(기획재정 부)					
60	아산면 하갑리	687	687-1	답	1,226.8	250.1	국(기획재정 부)					
61	아산면 하갑리	693	693-2	답	7,849.5	370.0	나관관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12				
62	아산면 하갑리	693	693-3	답	936.2	209.4	전라북도					
63	아산면 하갑리	694	694-1	답	1,519.2	330.8	국(기획재정 부)					
64	아산면 하갑리	695	695-2	답	855.8	288.5	류계분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독곡길 19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 람동)	구분지 상권	
65	아산면 하갑리	695	695-3	답	2,512.6	420.1	전라북도		한국전 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 람동)	구분지 상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6	아산면 하갑리	696	696-3	답	1,989.7	147.9	장기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쌍천길 99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67	아산면 하갑리	696-1	696-4	답	123.4	81.4	전라북도					
68	아산면 하갑리	714	714-3	답	3,695.4	685.4	나평중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103동 303호(온천마을제 일아파트)				
69	아산면 하갑리	714-1	714-4	답	268.9	18.4	전라북도					
70	아산면 하갑리	714-2	714-2	답	60.8	60.8	전라북도					
71	아산면 하갑리	715	715-4	목	2,090.2	387.4	전라북도					
72	아산면 하갑리	716	716-2	답	1,413.6	524.3	신천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1 112동 309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73	아산면 하갑리	716-1	716-3	답	766.3	389.3	전라북도					
74	아산면 하갑리	717	717-2	답	4,637.1	100.3	안두현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5				
75	아산면 하갑리	717-1	717-1	답	295.2	57.3	전라북도					
76	아산면 하갑리	717-1	717-3	답	295.2	237.9	전라북도					
77	아산면 하갑리	730	730-1	답	3,168.9	331.0	국(기획 재정부)					
78	아산면 하갑리	731	731-1	답	503.1	124.6	국(기획 재정부)					
79	아산면 하갑리	732	732-2	답	1,311.0	465.2	신천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1 112동 309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80	아산면 하갑리	732-1	732-1	답	186.5	186.5	전라북도					
81	아산면 하갑리	733	733-1	답	4,670.0	886.6	국(기획 재정부)					
82	아산면 하갑리	804	804-1	구	5,254.1	18.3	국(농림 수산부)					
83	아산면 하갑리	804	804-3	구	5,254.1	69.1	국(농림 수산부)					
84	아산면 하갑리	805	805-1	도	2,385.3	47.3	국(농림 수산부)					
85	아산면 하갑리	807	807-1	도	4,863.9	46.7	국(농림 수산부)					
86	아산면 하갑리	807	807-2	도	4,863.9	57.6	국(농림 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7	아산면 하갑리	808	808-2	구	4,371.1	23.4	국(농림수산 부)					
88	아산면 하갑리	808	808-3	구	4,371.1	85.1	국(농림수산 부)					
89	아산면 하갑리	810	810-1	구	4,319.2	27.5	국(농림수산 부)					
90	아산면 하갑리	810	810-3	구	4,319.2	1,416.7	국(농림수산 부)					
91	아산면 하갑리	855	855-1	답	1,348.2	562.6	김낙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 333 118동 601호 (인후동1가 위브어울림아파트)				
92	아산면 하갑리	856	856-1	답	869.7	261.0	김희준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0-2				
93	아산면 하갑리	857	857-1	답	1,350.9	225.0	김기팔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265	김영재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11	근저당 권	
94	아산면 하갑리	857	857-2	답	1,350.9	8.2	김기팔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265	김영재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11	근저당 권	
95	아산면 하갑리	896	896-1	답	1,506.4	620.8	국(기획재정 부)					
96	아산면 하갑리	897	897-1	답	2,576.5	488.9	국(기획재정 부)					
97	아산면 하갑리	898	898-1	답	1,922.3	322.0	국(기획재정 부)					
98	아산면 하갑리	899	899-1	답	1,992.7	129.6	안동현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5				
99	아산면 하갑리	917	917-1	도	3,008.3	55.3	국(농림축산 식품부)					
100	아산면 하갑리	918	918-1	구	2,368.5	70.0	국(농림축산 식품부)					
101	아산면 하갑리	920	920-1	구	2,982.4	65.2	국(농림축산 식품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영농손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물건명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아산면 봉덕리	1056	1056-1	답	벼	1,749.5	708.0	양귀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264	
2	아산면 봉덕리	1057	1057-1	답	벼	3,711.1	996.0	성백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4	
3	아산면 봉덕리	1058	1058-1	답	벼	1,292.6	8.2	성백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4	
4	아산면 봉덕리	1066	1066-1	답	벼	4,325.6	938.4	고창군		
5	아산면 봉덕리	1078	1078-1	답	벼	1,718.1	707.8	고창군		
6	아산면 봉덕리	1079	1079-1	답	벼	2,943.0	400.2	광산김씨대양공 과종중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329	
7	아산면 상갑리	674	674-1	답	벼	853.4	469.4	안도희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34	
8	아산면 상갑리	675	675-1	답	벼	899.6	326.0	국(기획재정부)		
9	아산면 상갑리	676	676-1	답	벼	3,859.2	127.7	전동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52-53	
10	아산면 상갑리	687	687-1	답	벼	3,396.2	696.9	문순옥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갑평1길 23	
11	아산면 상갑리	698	698-1	답	벼	1,131.4	367.7	강형희 외 3명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서당촌길 23-7	
12	아산면 상갑리	706	706-1	답	벼	2,048.1	966.6	강영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8-18-2층	
13	아산면 상갑리	716	716-1	답	벼	3,449.7	951.8	신이호	고창군 아산면 당산길 60-22	
14	아산면 상갑리	727	727-1	답	벼	3,524.7	951.3	이수현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갑평1길 36	
15	아산면 상갑리	737	737-1	답	벼	4,723.4	929.9	전이환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265	
16	아산면 상갑리	747	747-1	답	벼	5,557.3	89.7	한분희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26	
17	고창읍 죽림리	767	767-1	답	벼	1,990.0	476.0	국(기획재정부)		
18	고창읍 죽림리	768	768-1	답	벼	3,109.0	102.0	김옥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40	
19	고창읍 죽림리	798	798-1	답	벼	3,830.0	641.0	이수옥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남구3길 26-3	
20	고창읍 죽림리	799	799-1	답	벼	1,700.0	726.0	김만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875	
21	고창읍 죽림리	827	827-1	답	벼	1,774.0	719.0	김종석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길 24-6	
22	고창읍 죽림리	828	828-1	답	벼	1,656.0	499.0	김정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26-29 203호(잠실동)	
23	고창읍 죽림리	829	829-1	답	벼	2,335.0	167.0	김규상 외 2명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392	
24	아산면 하갑리	686	686-1	답	벼	1,474.9	309.5	국(기획재정부)		
25	아산면 하갑리	687	687-1	답	벼	1,226.8	250.1	국(기획재정부)		
26	아산면 하갑리	693	693-2	답	벼	7,849.5	370.0	나관균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물건명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7	아산면 하갑리	693	693-3	답	벼	936.2	209.4	전라북도		
28	아산면 하갑리	694	694-1	답	벼	1,519.2	330.8	국(기획재정부)		
29	아산면 하갑리	695	695-2	답	벼	855.8	288.5	류계문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독곡길 19	
30	아산면 하갑리	695	695-3	답	벼	2,512.6	420.1	전라북도		
31	아산면 하갑리	696	696-3	답	벼	1,989.7	147.9	장기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쌍천길 99	
32	아산면 하갑리	696	696-4	답	벼	123.4	81.4	전라북도		
33	아산면 하갑리	714	714-3	답	벼	3,695.4	685.4	나평중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103동 303호(온천마을제일아파트)	
34	아산면 하갑리	714	714-4	답	벼	268.9	18.4	전라북도		
35	아산면 하갑리	714	714-2	답	벼	60.8	60.8	전라북도		
36	아산면 하갑리	715	715-4	목	벼	2,090.2	387.4	전라북도		
37	아산면 하갑리	716	716-2	답	벼	1,413.6	524.3	신천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1 112동 309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38	아산면 하갑리	716	716-3	답	벼	766.3	389.3	전라북도		
39	아산면 하갑리	717	717-2	답	벼	4,637.1	100.3	안두현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5	
40	아산면 하갑리	717	717-1	답	벼	295.2	57.3	전라북도		
41	아산면 하갑리	717	717-3	답	벼	295.2	237.9	전라북도		
42	아산면 하갑리	730	730-1	답	벼	3,168.9	331.0	국(기획재정부)		
43	아산면 하갑리	731	731-1	답	벼	503.1	124.6	국(기획재정부)		
44	아산면 하갑리	732	732-2	답	벼	1,311.0	465.2	신천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1 112동 309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45	아산면 하갑리	732	732-1	답	벼	186.5	186.5	전라북도		
46	아산면 하갑리	733	733-1	답	벼	4,670.0	886.6	국(기획재정부)		
47	아산면 하갑리	855	855-1	답	벼	1,348.2	562.6	김낙훈	전라북도 진주시 덕진구 건원로 333 118동 601호 (인후동1가 워브어울림아파트)	
48	아산면 하갑리	856	856-1	답	벼	869.7	261.0	김희준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0-2	
49	아산면 하갑리	857	857-1	답	벼	1,350.9	225.0	김기팔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265	
50	아산면 하갑리	857	857-2	답	벼	1,350.9	8.2	김기팔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2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물건명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1	아산면 하갑리	896	896-1	답	벼	1,506.4	620.8	국(기획재정부)		
52	아산면 하갑리	897	897-1	답	벼	2,576.5	488.9	국(기획재정부)		
53	아산면 하갑리	898	898-1	답	벼	1,922.3	322.0	국(기획재정부)		
54	아산면 하갑리	899	899-1	답	벼	1,992.7	129.6	안동현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5	

전라북도 고시 제2023-32호

오동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오동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 구간								하천 연장 (km)	결정 (변경)일
			기 점				종 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당초	오동천	지방	전북	순창	동계	동심리 343번지선	전북	순창	동계	현포리 오수천(지방)합류점	4.00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순창	동계	동심리 1502번지선	전북	순창	동계	현포리 632-3번지선 오수천(지방)합류점	2.83	2023.02.03.

2. 지정(변경) 사유

-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의 지정 변경(일부구간 지정 해제)

전라북도 고시 제2023-33호

오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오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섬진강	오동천	지방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343번지선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오수천(지방)합류점	4.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343번지선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오수천(지방)합류점	4.00	전라북도 고시 제2012-68호 (2012.04.20.)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502번지선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632-3번지선 오수천(지방)합류점	2.83	채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오동천	9.18	1,348.7	12.38	0.0031	5.25	1.36	6.61	5.77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오동천	2.83	2.83	-	5.76	0.46	5.30	-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오동천	오동천 종점 (No.0+000)	9.18	50	199	199	-	-
	신감소하천 합류전 (No.0+720)	5.54	50	135	135	-	-
	관전교 지점 (No.1+240)	5.11	50	135	135	-	-
	추동소하천 합류전 (No.1+880)	4.08	50	119	119	-	-
	동심3천 합류전 (No.1+960)	3.25	50	100	100	-	-
	아동소하천 합류전 (No.2+640)	1.13	50	36	36	-	-
	오동천 시점 (No.2+826)	1.09	50	36	36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오동천	0+000	0	199	89.80	50	20	32	90.13	90.34	오동천 종점
	0+720	720	135	91.49	50	23	26	91.09	91.34	신감소하천 합류전
	1+240	1,240	135	96.30	50	23	23	96.61	96.61	관전교 지점
	1+880	1,880	119	102.75	50	13	23	102.07	103.06	추동소하천 합류전
	1+960	1,960	100	103.32	50	10	20	102.85	103.09	동심3천 합류전
	2+640	2,640	36	113.67	50	9	12	115.43	114.22	아동소하천 합류전
	2+826	2,826	36	117.90	50	4	4	117.62	117.62	오동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오동천	0+000~2+826	좌안	복원지구	2,826	43,735
	0+000~2+826	우안	복원지구	2,826	58,703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라북도청 물통합관리과, 순창군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34호

오동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물통합관리과), 순창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오동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3. 2. 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오동천	9개 지구 (좌안 - 5개 지구, 우안 - 4개 지구)		5.652	102,438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849번지선 (No.0+716)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632-3번지선 (No.0+000)	0.716	11,06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257-1번지선 (No. 1+274)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849번지선 (No. 0+716)	0.558	9,79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719번지선 (No. 1+973)	전북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257-1번지선 (No. 1+274)	0.699	9,48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500번지선 (No. 2+676)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719번지선 (No. 1+973)	0.703	11,044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777번지선 (No. 2+826)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500번지선 (No. 2+676)	0.150	2,350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2.826	43,735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오동천	전북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711번지선(No. 1+274)	전북 순창군 동계면 원포리 636-8번지선(No. 0+00)	1.274	33,52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47-7번지선(No. 1+656)	전북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711번지선(No. 1+274)	0.382	9,30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531번지선(No. 2+460)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47-7번지선(No. 1+656)	0.804	10,93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777번지선(No. 2+826)	전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531번지선(No. 2+460)	0.366	4,941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2.826	58,703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35호

오동천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오동천 지방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공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전라북도(물통합관리과), 순창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오동천 지방하천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2023. 2. 3
3. 폐천부지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407-2번지 외 18필지
4. 폐천부지의 종류 및 면적

하천명	지목	구분	계	관리계획	발생사유
오동천	계	필지수(EA)	19	보전	하천기본계획 제수립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폐천면적(m ²)	10,836		
	도	필지수(EA)	9		
		편입면적(m ²)	2,639		
	유	필지수(EA)	3		
		편입면적(m ²)	1,416		
	임	필지수(EA)	2		
		편입면적(m ²)	993		
	천	필지수(EA)	3		
		편입면적(m ²)	4,194		
	구	필지수(EA)	2		
		편입면적(m ²)	1,594		

- 첨부 열람서류 : 1. 폐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폐천구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3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임실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임실군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1.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 분	농업진흥지역			비 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라북도	135,875.5	117,463.4	18,412.1	- 진흥 : △0.2	- 보호 :
임 실 군	5,602.3	4,382.9	1,219.4	- 진흥 : △0.2	- 보호 :

※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해제 사유

- 임실 군계획시설(국립묘지 시설) 실시계획 인가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543번지 일원)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1,624.4m² 해제

3. 농업진흥지역 도면(1/5,000) 및 토지조서는 임실군에 보관한다.

4.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6호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라북도지사

■ 공고사항

구분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설치위치	용량 (kW)	비고
양도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박경식, '66.9.2.)	전라북도 제 2019-642호	만도익산공장 태양광발전소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3, 건물상부	2,998.00	
양수	부산정관에너지(주) (김경태, '71.2.2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9호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라북도지사

■ 공고사항

구분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설치위치	용량 (kW)	비고
양도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박경식, '66.9.2.)	전라북도 제2018-2258호	디와이익산1공장 태양광발전소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3, 839 건물상부	1,434	
양수	부산정관에너지(주) (김경태, '71.2.2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3-19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2월 3일

등록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영업소 소재지
주식회사 이음	탁영균	2023. 1. 25.	전북230001	금1,200,000,000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월평 1길 76, 1층 103호(전미동2가)

전라북도 공고 제2023-19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3.
전라북도지사

1. 허가번호 : 전라북도 제2005-6450000-008-0004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
4. 대표자 : 이강실
5. 주된사업
 -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운영 등
6. 변경사항 : 붙임1
7. 변경일자 : 2023. 1. 31.

붙임 1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관 변경내용**

현행(구조문)	개정안(신조문)
<p>제4조(사업) 본 법인은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p> <p>①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의 상담 및 구조,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p> <p>② 상담소 운영</p> <p>③ 쉼터 운영</p> <p>④ 자활지원센터 운영</p> <p>⑤ 그룹홈 운영</p> <p>⑥ 성매매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대중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 문화 사업</p> <p>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정책 개발 및 집행 감시 사업</p> <p>⑧ 성매매여성인권운동 단체간 네트워크 강화와 타 여성 시민 단체간 연대활동</p> <p>⑨ 국제적 인신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p> <p>⑩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p>	<p>제4조(사업) 본 법인은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p> <p>제4조의 1. 사업</p> <p>① 성매매피해여성 통합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p> <p> 1.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p> <p> 2.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일반)지원시설 운영</p> <p> 3. 자활지원센터 운영</p> <p>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p> <p> 5.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p> <p>②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의 상담 및 구조,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p> <p>③ 성매매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대중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 문화 사업</p> <p>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정책 개발 및 집행 감시 사업</p> <p>⑤ 성매매여성인권운동 단체간 네트워크 강화와 타 여성 시민 단체간 연대활동</p> <p>⑥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p> <p>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p> <p>⑧ 자활지원센터 판매장 등에 따른 수익사업</p> <p>제4조의 2. 수익사업의 내용 등</p> <p>① 본 법인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 1. 자활지원센터 판매장 등</p> <p> ② 자활지원센터 판매장 등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간접비로 사용한다.</p>
<p>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p> <p>② 회원이 법인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p> <p>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p>	<p>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p> <p>②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p>
<p>제10조 (임원의 선출)</p> <p>③ (신설)</p>	<p>제10조 (임원의 선출)</p> <p>③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제13조 (감사의 직무)</p> <p>감사는 -----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p>	<p>제13조 (감사의 직무)</p> <p>감사는 ----- 감독관청에게 보고한다.</p>

현행(구조문)	개정안(신조문)
제18조 (총회의 의결) ② 총회의 ---- 기명날인하여 공중하며, 총회의사록 공중 촉탁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명날인한 임원으로 한다. ③ (신설)	제18조 (총회의 의결) ② 총회의 ---- 기명날인한다. ③ 공중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기명날인인을 공중 위임인으로 한다.
제 6장 집행위원회	제 6장 운영위원회
제 24조 (구성) ① 본 법인의 ---- 집행위원회 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는 센터장, 사무국장, 각 부설기관장, 각 부설 기관 사무국장 으로 한다.	제 24조 (구성) ① 본 법인의 ----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는 센터장, 사무국장, 각 부설기관장 등으 로 한다.
제 25조 (소집) ① 집행위원회 는 ----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 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집행위원회 의 의결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5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 는 ----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의 의결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사무국) ②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가 ----	제27조 (사무국) ②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가 ----
제 28조 (자문위원단) ② 자문위원은 당해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자 로서 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제 28조 (자문위원단) ② (삭제)
제32조 (재산처분) 기본 재산을 ----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재산처분) 기본 재산을 ----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세입 세출 예산, 결산) ① 본 법인의 ----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 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 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세입 세출 예산, 결산) ① 본 법인의 ----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은 ----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처 의 ----	제35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은 ----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의 허가 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 의 ----
제36조 (정관의 제·개정) 본 법인의 ---- 총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부 처 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정관의 제·개정) 본 법인의 ---- 총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 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3-1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60호(2018.5.1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수송동 658-4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658-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 나. 명 칭 : 남북로~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 고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²)	
중로2-15	165m	15m	전북고136 (‘87.10.22.)	165m	15m	2,582m 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당초 2018. 5. 11. ~ 2022. 12. 31.
 - 나. 변경 2018. 5. 11.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군산	수송	658-48	답	760	760	-	군산시			
2	군산	수송	51-35	답	270	270	-	군산시			
3	군산	수송	51-33	답	415	415	-	군산시			
4	군산	수송	51-31	답	576	576	-	군산시			
5	군산	수송	51-28	답	176	176	-	군산시			
6	군산	수송	51-19	답	143	143	-	군산시			
7	군산	수송	761-3	구	12040	242	농수산부	국			
소계(7필지)						2,582					

정읍시 고시 제2023-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명 : 정읍 상동 1차 영무 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2. 승인번호 :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0. 4. 21.)
3. 사업주체
 - 가. 성명 : (주)와이엠개발(대표: 박장배)
 -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4길 31, 801호
4. 사업위치 : 정읍시 상동 산35-1번지 외 31필지
5. 사업기간 : 2020. 6. 5 ~ 2023. 6. 5.
6.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3차) 개요

구분	사업계획변경승인(당초)	사업계획변경승인(변경)	비고
대지위치	정읍시 상동 산35-1 외 31필지	좌동	
대지면적	23,080.0000㎡	좌동	
건축면적	5,867.3234㎡	좌동	
연면적합계	78,875.1170㎡	78,948.3978㎡	73.2808㎡ 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4,280.2015㎡	좌동	
건폐율	25.42%	좌동	
용적률	235.18%	좌동	
전용면적별 세대수	84.9759㎡ - 135세대 96.4119㎡ - 26세대 123.1800㎡ - 188세대 135.6600㎡ - 37세대	좌동	
조경면적	5,332.47㎡	좌동	
주차대수	625대(지상 93, 지하 532)	좌동	
사업기간	2020. 6. 5 ~ 2023. 6. 5.	좌동	
사업비	127,427,637,000원	좌동	
아파트명	상동 1차 영무예다음아파트	좌동	
아파트동수	6동	좌동	

정읍시 공고 제2023-181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동 1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나. 명 칭 : 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시행면적 또는 규모
 - 가. 면적 : 1,665㎡
 - 나. 규모 : 도로개설(중로2-6) L=114m, B=15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익산시 익산대로4길 31, 801호
 - 나. 성 명 :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공시일 ~ 2023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붙임”
7.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안전국 도시과(☎063-539-5782)
8. 열람기간 : 도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10. 의견서 제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동 기간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정읍	상	13-5	답	477	445		정읍시				
2	"	"	14-1	답	89	89		정읍시				
3	"	"	22-7	답	31	31		정읍시				
4	"	"	23-3	답	53	53		정읍시				
5	"	"	24-5	전	45	45		정읍시				
6	"	"	26-6	답	106	106		국(기획재정부)				
7	"	"	26-9	전	217	217		정읍시				
8	"	"	27-6	전	5	5		정읍시				
9	"	"	28-9	전	472	472		정읍시				
10	"	"	719-165	구	119	119		국(기획재정부)				
11	"	"	731-19	도로	25	25		국(건설부)				
12	"	"	731-26	도로	1,232	58		국(국토해양부)				
계			12필지		2,871	1,665						

남원시 고시 제2023-18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확정 결정되어 추진 중인 『산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산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92-3번지 외 3필지
 - 사업의 규모 : 1,6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교통과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4필지	9,432	1,624					
1	남원	산내	부운	산92-3	임	8,636	1,168	전라북도				
2	남원	산내	부운	산92-11	임	198	80	전라북도				
3	남원	산내	부운	산92-16	도	176	176	국유지 (건설부)				
4	남원	산내	부운	산92-6	도	422	200	국유지 (건설부)				

김제시 고시 제2023-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명 : 김제시 금구면 국제미소래(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 케이엔시티 주식회사 (대표자 김대식)

나.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77, 3층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22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801㎡ (도로:77㎡ 구거:492㎡)

다. 건축면적 : 1,408.6441㎡

라. 연면적 : 30,106.1806㎡

마. 규모 : 196세대 (주3개동/지하2층,최고27층)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민간임대

아. 사업기간 : 2023. 5. ~ 2026. 6.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오영채(☎540-33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고시 제2023-13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검산동 845-1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류 : 김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1-41호선)
 - 나. 명칭 : 홈플러스~주공2차입구간 소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구 분	도로 연장 및 폭원	면 적			비고(사업시행자)
		기 정	변 경	증 감	
1구간	L=129m, B=10m	1,448㎡	1,454㎡	6㎡	김제시
2구간	L=122m, B=10m	1,215㎡	1,215㎡	-	우리자산신탁(주)
합 계		2,663㎡	2,669㎡	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구 분	성 명	주 소	비 고
1구간	김제시장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2구간	우리자산신탁(주) 공동대표이창하,이창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구 분	착수에정일	준공예정일		비고(사업시행자)
		기 정	변 경	
1구간	2020. 6. 19	2025. 12. 31	변경없음	김제시
2구간	2022. 5. 6.	2023. 12. 31	2025. 12. 31.	우리자산신탁(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김제시	우리자산 신탁(주)				
	계				3,381	3,237	2,663	(증)6	2,669	1,454	1,215				
1	김제시 검산동	841-8	841-8	대	130	130	115	-	115	115	-	김제시		없음	
2	김제시 검산동	841	841	전	468	468	468	-	468	468	-	김제시		없음	
3	김제시 검산동	845-1	845-1	답	157	157	157	-	157	157	-	김제시		없음	
4	김제시 검산동	846-5	846-8	답	614	470	464	(증)6	470	470	-	전*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9 솔피마을 현대홈타운아파트 ***-***	없음	
5	김제시 검산동	847-49	847-49	전	42	42	42	-	42	42	-	김제시		없음	
6	김제시 검산동	847-46	847-46	전	29	29	29	-	29	29	-	김제시		없음	
7	김제시 검산동	847-47	847-47	전	175	175	174	-	174	158	16	김제시		없음	
8	김제시 검산동	847-48	847-48	전	22	22	22	-	22	3	19	김제시		없음	
9	김제시 검산동	951-12	951-12	도	569	569	48	-	48	12	36	국(건설부)		없음	
10	김제시 검산동	833-11	833-11	임	16	16	14	-	14	-	14	김제시		없음	
11	김제시 검산동	832-7	832-7	전	148	148	141	-	141	-	141	김제시		없음	141/148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7/148
12	김제시 검산동	832-12	832-12	전	23	23	23	-	23	-	23	김제시		없음	
13	김제시 검산동	831-8	831-8	전	31	31	31	-	31	-	31	김제시		없음	
14	김제시 검산동	831-5	831-5	전	109	109	101	-	101	-	101	김제시		없음	
15	김제시 검산동	830-14	830-14	답	103	103	103	-	103	-	103	김제시		없음	
16	김제시 검산동	830-16	830-16	답	165	165	165	-	165	-	165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17	김제시 검산동	830-15	830-15	답	30	30	30	-	30	-	30	김제시		없음	
18	김제시 검산동	830-22	830-22	답	14	14	14	-	14	-	14	김제시		없음	
19	김제시 검산동	830-20	830-20	답	11	11	11	-	11	-	11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20	김제시 검산동	830-21	830-21	답	22	22	22	-	22	-	22	김제시		없음	
21	김제시 검산동	830-23	830-23	답	24	24	24	-	24	-	24	김제시		없음	
22	김제시 검산동	830-13	830-13	답	89	89	89	-	89	-	89	김제시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권입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계	김제시	우리자산 신탁(주)				
23	김제시 검산동	830-24	830-24	답	19	19	19	-	19	-	19	김제시		없음	
24	김제시 검산동	830-17	830-17	답	16	16	16	-	16	-	16	김제시		없음	
25	김제시 검산동	830-18	830-18	답	15	15	15	-	15	-	15	김제시		없음	
26	김제시 검산동	830-19	830-19	답	9	9	9	-	9	-	9	김제시		없음	
27	김제시 검산동	819-9	819-9	답	43	43	43	-	43	-	43	김제시		없음	
28	김제시 검산동	819-10	819-10	답	32	32	32	-	32	-	32	김제시		없음	
29	김제시 검산동	819-6	819-6	답	255	255	241	-	241	-	241	김제시		없음	
30	김제시 검산동	818-5	818-5	전	1	1	1	-	1	-	1	우리자산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없음	

김제시 공고 제2023-108호

김제 도시계획시설(도로:금산 소로3-10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금산 도시계획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2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8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김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금산 소로3-10호선)
 - 나. 명 칭 : 금산 도시계획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및 규모 : 1,257㎡(L=207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비에이치랜드 대표 양미희
 - 나.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19-3, 704호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고시일 ~ 2025. 01.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80-4	전	1,534	291		김제시				
2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90-9	전	309	309		김제시				
3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731-1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4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712-65	천	8,335	62		국(국토교통부)				
5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0-13	전	703	407		김제시				
6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5-2	전	87	87		김제시				
7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26-12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8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26-14	도	24	24		국(기획재정부)				
9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27-1	도	13	13		국(기획재정부)				
10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27-3	도	31	31		국(기획재정부)				
소 계				11,069	1,257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8. 열람사항

가.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063-540-3919)

다.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

라. 의견서 제출 : 관계서류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직접교부의 방법으로는 관계인 부재 사유로 수취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3.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6. (14일간)
- 공고내용: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 통지(코앞B관 1동)

1. 관련근거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코앞B관 1동, '22. 7. 5.)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년 3월 17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치명령 연기신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붙임 조치명령서[코앞 B관 1동]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3-006호

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교앞 B관 지하층 소유주 이봉진 귀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3길 15
조치명령 대상	대상: 교앞 B관 1동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4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조치명령 구분	사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화재안전기술기준(NFCC)
	내용: 불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3. 2. 17. - 2023. 3.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주덕진소방서장



210mm x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종절지(80g/m²)]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1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 소화기구 1. 소화기 불량 - 지하 1층 4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 - 지하 2층 5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	보수요함	NFTC 101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 회로 선로 단선 - 지하 1층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 - 지하 1층 발신기 불량(1개소)	보수요함	NFT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4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 지하 1층 5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보수요함	NFTC 303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3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직접교부의 방법으로는 관계인 부재 사유로 수취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3.

전주 덕진 소방서 장

-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6. (14일간)
- 공고내용: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 통지(코앞B관 2동)

1. 관련근거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코앞B관 2동, '22. 7. 5.)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년 3월 17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치명령 연기신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붙임 조치명령서[코앞 B관 2동]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3-007호

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교앞 B관 지하층 소유주 이봉진 귀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3길 15
조치명령 대상	대상: 교앞 B관 2동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3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조치명령 구분	사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화재안전기술기준(NFCC)
	내용: 불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3. 2. 17. - 2023. 3.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주덕진소방서장



210mm x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종절지(80g/m²)]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2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 소화기구 1. 소화기 불량 - 지하 1층 3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	보수요함	NFTC 101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 회로 선로 단선 - 지하 1층 회로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	보수요함	NFT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3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보수요함	NFTC 303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4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직접교부의 방법으로는 관계인 부재 사유로 수취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3.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6. (14일간)
- 공고내용: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 통지(코앞B관 3동)

1. 관련근거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코앞B관 3동, '22. 7. 5.)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년 3월 17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치명령 연기신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붙임 조치명령서[코앞 B관 3동]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3-008호

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교앞 B관 지하층 소유주 이봉진 귀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3길 15
조치명령 대상	대상: 교앞 B관 3동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2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조치명령 구분	사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화재안전기술기준(NFCC)
	내용: 불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3. 2. 17. - 2023. 3.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주덕진소방서장



210mm x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종절지(80g/m²)]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3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 소화기구 1. 소화기 불량 - 지하 1층 2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	보수요함	NFTC 101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미작동 - 지하 1층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 2. 지구경종 불량 - 지하 1층 지구경종 불량(1개소)	보수요함	NFT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2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보수요함	NFTC 303

전주덕진소방서 공고 제2023-5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직접교부의 방법으로는 관계인 부재 사유로 수취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3.

전 주 덕 진 소 방 서 장

- 공고기간: 2023. 2. 3. ~ 2023. 2. 16. (14일간)
- 공고내용: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 통지(코앞B관 4동)

1. 관련근거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코앞B관 4동, '22. 7. 5.)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년 3월 17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치명령 연기신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붙임 조치명령서[코앞 B관 4동]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10.>

2023-009호

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교앞 B관 지하층 소유주 이봉진 귀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3길 15
조치명령 대상	대상: 교앞 B관 4동
	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3-1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조치명령 구분	사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화재안전기술기준(NFCC)
	내용: 불임참고 ○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방법: 정비(설치 또는 수리)
	기간: 2023. 2. 17. - 2023. 3.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주덕진소방서장



210mm x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종절지(80g/m²)]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특정소방대상물: 코앞 B관 4동]

구분	지적사항	조치방법	법적근거
소화 설비	※ 소화기구 1. 소화기 불량 - 지하 1층 1상영관 소화기 2개(내구연한)	보수요함	NFTC 101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미작동 - 지하 1층 감지기 선로 단선으로 감지기 미작동 2. 지구경종 불량 - 지하 1층 지구경종 불량(1개소)	보수요함	NFTC 203
피난 구조 설비	※ 유도등 1. 유도등 미점등 - 지하 1층 1상영관 출입구 2개소 피난구유도등(벽부중형) 미점등	보수요함	NFTC 303